

학생생활·성평등상담소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4.4.22.		16		
2	2017.11.2.		17		
3	2020.8.24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학생생활·성평등상담소 규정

제1조 (목적) 본 상담소는 대학생들이 자신에게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해결하도록 도움으로써 건강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, 대학 내 성폭력의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및 사건 처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. 10. 15, 2014.4.22.>

제2조 (명칭) 본 연구소는 “한국항공대학교 학생생활·성평등상담소” (Korea Aerospace University Student Counseling & Gender Equality Center, 이하 ‘상담소’라 한다)라 칭한다. <개정 2007. 7. 25, 2014.4.22.>

제3조 (업무) 본 상담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.

1. 상담분야 <개정 2017. 11. 2>
 - 가. 개인상담
 - 나. 집단상담
 - 다. 심리검사 및 해석
 - 라. 기타 상담에 관련된 전문 활동
 - 마. 진로 및 학습상담 <신설 2012. 10. 15>
2. 조사연구 분야
 - 가. 학생실태 및 생활지도에 관한 연구
 - 나. 심리, 상담에 관한 조사연구
 - 다. 진로탐색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
 - 라. 기타 연구에 관련된 행동들
3. 삭제 <2012. 10. 15>
4.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처리 <신설 2012.10.15, 개정 2017.11.2>
 - 가.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
 - 나. 성희롱·성폭력 신고접수 및 처리
 - 다. 피해사례에 대한 위기상담

제4조 (구성) 본 상담소는 소장, 책임상담연구원, 상담연구원을 둔다.
<개정 2012. 10. 15, 2017.11.2, 2020.8.24>

제5조 (구성원 자격) ① 본 상담소의 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책임상담연구원은 박사학위소지자로, 상담심리사 또는 전문상담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로 하며, 상담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, 상담심리사 또는 전문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전문가로 한다. <신설 2012.10.15, 2017.11.2, 2020.8.24>

- ③ 상담소의 전문상담 및 업무개선을 위해 필요에 따라 객원상담사 및 자원봉사 상담사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12. 10. 15>

제6조 (강좌개설) ① 상담소는 필요에 따라 특별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

- ② 전 항의 특별강좌 개설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69. 9.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 규정은 197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개정 규정은 197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개정 규정은 197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5. 이 개정 규정은 198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6.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7.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8.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9.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10.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하되,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11.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하되,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12.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